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2. 1. 19.][환경부고시 제2022-19호]

[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살균제품 3~4, 구제제품 2~5, 기타 5는 승인대상제품[7품목]